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후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기재가 누락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용신안등록출원결정 후에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 순위에 따라 심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적인 원칙대로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9. 1. 22. ~ 3. 4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전 까지 추가”를 “추가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호에 따른 서식을 제출할 때에는 고안자의 기재가 누락(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누락에 한정한다) 또는 잘못 적은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·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1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심사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청장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 순위를 부여받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고안자의 추가 등)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자 중 일부의 고안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<u>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.</u>다만, <u>고안자의 기재가 누락(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누락에 한정한다)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</p>	<p>제7조(고안자의 추가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추가</u>----- ----- ----- . <단서 삭제>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<u>다만, 제2호에 따른 서식을 제출할 때에는 고안자의 기재가 누락(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누락에 한정한다)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</u></p>

③ (생략)

제9조(심사의 순위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

가.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한 후 그 분할출원을 심사청구한 경우

나.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1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한 후 그 변경출원을 심사청구한 경우

2. 특허청장이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

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·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심사의 순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1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.

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
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
경우: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
한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
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
른 심사 순위

③ 심사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
심사 순위에 따라 심사하려는
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심
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<삭 제>